"새로운 시작, 비상하는 포천"

평화로 만들어 가는 행운의도시 포천

포 천 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강화 규정 안내

1. 귀 기관 및 귀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**고용노동부공고 제2020-532호(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, 2020.12.30.)**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-5745(2020.12.31.)호와 관련입니다.

3. 최근 외국인근로자에게 열악한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 제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**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강화 규정**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

4.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강화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회원사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**기업에서는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**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와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기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**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강화 규정**

가.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시 고용허가 발급금지(2021. 1. 1.시행)

나. **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허용**(2021. 2월 중 고시 개정하여 시행 예정)

다. 기숙사 시설표 및 시각자료(사진•동영상 등) 제출 의무화 (2021.하반기 전 업종 확대)

라. 기숙사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실제로는 **부실 기숙사(무허가 가설건축물 등)를 제공하는 경우,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조치**

마. **우수기숙사 제공시 신규 외국인력 가점 상향(2.5 ⇒ 5점, 2021. 2월 시행).** 끝.

포 천 시 장

수신자 포천상공회의소, 포천양문염색사업협동조합,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, 식품제조업협의회,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, 경기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, 포천가구산업연합회, 포천가구사업협동조합, 포천명품가구공예협동조합, 포천생활가구협동조합, 포천가구협동조합, 오성과한음가구협동조합, 마홀디자인협동조합, 포천송우패션타운협동조합, 장자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, 금현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, 기업 대표님 귀하 귀하

기업지원팀장 **정영옥** 기업지원과장 전결 2021.1.8. **조대룡**

협조자

시행 기업지원과-343 (2021. 1. 8.) 접수

우 11149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34번길 8, (신읍동) (신읍동) / www.pocheon.go.kr

전화번호 031-538-2284 팩스번호 031-538-2761 / ok052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평화시대 남북경협 거점도시 포천